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5 - 081 호

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신입직원 채용공고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내 환경·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진흥원과 함께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5년 8월 1일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

1 채용예정인원

직 종	세부직종	직 급	구분모집	채용예정인원(명)
총 계				3
일반직	— (경영/회계)	4급	일반	1
일반직	— (기후/도민협력)	5급	일반	2

※ 근무조건 및 직무내용 등 세부조건은 별도 붙임파일 확인

2 전형절차

가. 제1차 시험 : 선택형(4지택일) 필기시험

-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(NCS)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.
※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(1교시)의 경우,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(NCS, 전공과목)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(가산점 포함)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.

-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 (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)
- 응시자격 미충족,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, 예비합격자(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)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나. 제2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및 서류 불성실 기재여부를 심사합니다.
※ 서류 불성실 기재 예시 : 의미없는 단어반복, 타인과 동일한 내용 등
- 서류전형 위원의 과반수가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경우, 불합격 처리됩니다.

다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.
 - 평가방식 : 다대일 면접(약 20분 내외)
 - 면접형태 : 발표 면접, 질의응답 등을 통한 응시자 역량 평가
 - 평가항목 및 배점
 -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(30점)
 -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(30점)
 - ③ 예의·품의·성실성(20점)
 - ④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10점)
 - 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(10점)
- 심사평균점수가 만점의 40%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(가산점포함)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퇴사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차 시험 성적 차순위자(만점의 40% 미만 득점자 제외)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.
(예비합격자 규모 :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/ 사유 발생 시 대상자 개별 연락)
-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합니다.
 - ① 취업지원대상자
 - ② 제1차시험 총점 고득점자
 - ③ 제1차시험 전공과목 고득점자

3

시험과목(필기시험)

※ 1교시 인성검사(210문항, 30분)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

모집단위(직종·직급)	구분모집	시험과목		문항수
일반직 4급 (경영/회계)	일반	2교시 (50분)	NCS*	50
		3교시 (20분)	전공(회계학)	20
일반직 5급 (기후/도민협력)	일반	2교시 (50분)	NCS*	50
		3교시 (20분)	전공(기후환경)	20

* NCS : 5개 영역(의사소통·수리·문제해결·자원관리·조직이해) / 영역당 10문항

4

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인사규정」 제2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
 11.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
 12.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(단,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)

(이하 생략)

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인사규정」 제46조(정년퇴직)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.

(이하 생략)

「병역법」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,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.

1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
2. 징집·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
3.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
(이하 생략)

나. 응시연령 : 18세 이상 (2007.12.31. 이전 출생자)

다.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※ 채용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

모집단위(직종·직급)	구분모집	자격요건
일반직 4급 (경영/회계)	일반	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·출자·출연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관련 업무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.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 7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.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일반직 5급 (기후/도민협력)	일반	별도 자격요건 없음

- ※ 상기 직급별 자격은 해당기관 또는 기업체(단체) 등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력을 아래 기준으로 판단함
- ① 직급별 자격기준 산정 대상 경력은 입사지원서에 명시한 경력 중 경력증명서와 「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」(또는 「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」)를 모두 제출한 경력에 한함
 - ② 직급별 자격기준 경력은 ①의 제출서류를 통해 경력과 수행직무, 근무기간이 명확히 확인 되는 경력을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함
 - ③ 직급별 자격조건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제출 시 미인정 처리함

5 가산점 제도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시험(과목)별 만점의 5% 또는 10%	• 각 시험(과목) 만점의 40%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
사회적 약자	시험(과목)별 만점의 3%	• 원서접수 시, 증빙서류 제출 必 •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

나. 취업지원대상자

- (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(과목)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시험(과목)별 득점에 각 시험(과목)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10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※ 다만,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

- (2)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(보훈부 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확인

다. 사회적 약자

- (1) 장애인(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), 다문화가족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), 북한이탈주민(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)인 응시자는 각 시험(과목) 만점의 40%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시험(과목)별 득점에 각 시험(과목)별 만점의 일정비율(3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6 전형일정

구 분		일 정
원서접수 등	시험공고	2025. 8. 1.(금)
	응시원서 접수	2025. 8. 18.(월) ~ 8. 22.(금)
필기시험	시험장소 공고	2025. 9. 5.(금)
	필기시험	2025. 9. 13.(토)
	점수사전공개	2025. 9. 23.(화)
	합격자 발표	2025. 9. 30.(화)
서류전형	증빙서류 제출	2025. 10. 1.(수) ~ 10. 2.(목)
	서류심사	2025. 10. 16.(목) ~ 10. 21.(화)
	서류결과 발표	2025. 10. 27.(월)

구 분		일 정
면접시험	면접심사	2025. 11. 5.(수) ~ 11. 11.(화)
	면접결과 발표	2025. 11. 17.(월)
최종합격자 서류제출		2025. 11. 24.(월) ~ 11. 25.(화)
임용예정일		2025. 12. 1.(월)

※ 상기 일정은 기관 내부 사정 및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7 원서접수 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기간

- (1) 접수방법 :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(<https://gg.saramin.co.kr>)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※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'질문하기' 메뉴 이용

※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,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(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)하여야 하며,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,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- (2) 접수기간 : 2025. 8. 18.(월) 10:00 ~ 8. 22.(금) 17:00

※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(단,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)

나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- (1)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,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- (2)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(JPG, 해상도 100dpi이상, 3.5cm×4.5cm)이 필요합니다.

※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, 모자·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

(3)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※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,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(삭제)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

※ 단, 원서(이력서)접수 취소(삭제)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

(4)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, 통합채용 누리집(<https://gg.saramin.co.kr>)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.

(5) 장애인·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(<https://gg.saramin.co.kr>)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8 서류제출

가.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

(1) 제출방법 :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, 통합채용 누리집(<https://gg.saramin.co.kr>)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(스캔본) 형태로 제출(업로드)하여야 합니다.

(2) 제출서류

● 제출서류 (해당자에 한함)

－ 전형별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

-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
- 사회적 약자 증빙서류
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
 - 다문화가족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각 1부
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－ 경력증명서 각 1부 (담당업무 반드시 표기) ※일반직 4급 모집단위 응시자 필수

－ 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」 (또는 「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」) 각 1부

※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

－ 입사지원 시 기재한 교육사항, 경험, 표창사항, 자격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

※ 경력사항의 경우, 향후 호봉산정 등에 활용되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(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)

나.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
- (1) 오프라인(우편, 방문) 접수는 불가능하며, 반드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하기 바랍니다.
- (2) 입사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합니다.
- (3)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(출신지역, 가족관계, 신체적 조건, 출신학교 등)의 기재를 금지 합니다.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(4) 향후 서류전형 합격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.

- 면접시험 응시표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)

- (5) 향후 최종 합격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공통 제출서류

- 신원진술서 1부
- 최종학력증명서 1부 (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)
- 증명사진 파일 1부
- 통장사본 1부
-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※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- 주민등록초본 1부 (남성의 경우, 병역사항 기재) ※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-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※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

- 해당자 제출서류

- 경력증명서 1부 (담당업무 반드시 표기)
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) 1부 ※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
- ※ 해당 서류는 최종 경력(호봉) 인정을 위한 서류이며,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

9

기타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자격미비자의 응시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,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다.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(<https://gg.saramin.co.kr>)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, 서류전형·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마. 응시자는 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채용 세부 안내사항」이 채용 및 임용 전 과정에 본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.
- 바. 최종 합격 후 임용서류 검증 과정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(허위사실 기재 또는 자격기준 미달 등)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사.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아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(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)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(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로 결정함)
- 차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응시자(임용된 자는 제외)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 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【별지 제3호서식】)를 제출(recruit01@ggeea.or.kr)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- 카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3조의7(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)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(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) 등 관련 규정에 따라,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,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- 타.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(<https://www.gg.go.kr>) 및 통합채용 누리집(<https://gg.saramin.co.kr>)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(<https://gg.saramin.co.kr>)의 ‘질문하기’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